

##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도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관리기록 및 유실어구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어구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은 행정관청의 게시판,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관련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고, 보관 대장 및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안 제74조의2 신설)
- 나.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에 포획된 불법 어획물은 포획·채취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어구부설 해역에 배출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토록 함(안 제74조의3 신설)
- 다. 「수산업법」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되어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기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안 제76조제3항)
- 라. 법 제76조의2 신설로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고, 일정 규모의 어구가 유실될

경우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함에 따라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대상 어업과 작성 서식 및 유실어구 신고 대상 어구의 규모·신고 방법 등을 규정(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 1)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대상 어업은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어업으로 함
- 2) 유실어구의 신고 대상 어구의 규모는 자망 1천 미터 이상, 통발(장어통발 포함) 100개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으로 함
- 3) 유실어구의 신고는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후 24시간 이내 입항지 관할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방문, 유·무선통신, 전자적 방법 등)
- 4) 신고받은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실어구 수거 또는 선박 항행 안전 등을 위해 자료 제공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어구·시설물의 관리 등) ① 행정관청은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어구·시설물의 정보(품명, 규격, 수량, 사진 등)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② 영 제41의2제1항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행정관청이 영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6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4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어획물을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어구부설 해역에 배출하거나 위판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 중 “법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71조제1항”으로,

“수리한”을 “접수한”으로, “신청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으로 한다.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 법 제7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
2. 영 제2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근해안강망어업
3. 영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4. 영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

제83조의3(어구관리기록 및 유실어구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어업인이 작성해야 하는 어구관리기록부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실된 어구의 신고는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 입항지 관할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별지 제72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방문, 유·무선통신, 전자적 방법 등)해야 한다.

1. 자망 1천 미터 이상
2. 통발(장어통발 포함) 100개 이상
3. 안강망 1통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실어구 수

거 또는 선박 항행 안전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관련 시스템 입력 등 포함)해야 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 별지 제69호의3서식, 별지 제72호의3서식 및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어구 · 시설물의 보관대장

행정관청: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구 · 시설물 반환신청서                                                                                                                                                                                                 |    |              |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어구 · 시설물의 품명                                                                                                                                                                                                   |    | 어구 · 시설물의 수량 |
| 어구 · 시설물의 형태                                                                                                                                                                                                   |    |              |
| <p>위의 어구 · 시설물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해양수산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p> |    |              |

| 어구 · 시설물 인수증                                                                                                                                                                                                   |    |              |
|----------------------------------------------------------------------------------------------------------------------------------------------------------------------------------------------------------------|----|--------------|
| 인수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어구 · 시설물의 품명                                                                                                                                                                                                   |    | 어구 · 시설물의 수량 |
| 어구 · 시설물의 형태                                                                                                                                                                                                   |    |              |
| <p>위의 어구 · 시설물을 인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수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해양수산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p> |    |              |

# 어구관리기록부

## (FISHING GEAR MANAGEMENT LOGBOOK)

선명 :  
(Name of Ship)

어선번호 :  
(Official number)

어업의 종류 :  
(Types of fishery)

어구 사용 허가량 :  
(Authorized quantity of fishing gear)

| ①<br>년/월/일 | ②<br>어구 종류 | ③<br>적재량(출항시)<br>(개, 미터, 통) | ④<br>적재량(입항시)<br>(개, 미터, 통) | ⑤<br>설치량(입항시)<br>(개, 미터, 통) | ⑥<br>유실량(입항시)<br>(개, 미터, 통) | 폐어구                    |                 | ⑨<br>책임자<br>서명 |
|------------|------------|-----------------------------|-----------------------------|-----------------------------|-----------------------------|------------------------|-----------------|----------------|
|            |            |                             |                             |                             |                             | ⑦<br>폐기량<br>(개, 미터, 통) | ⑧<br>반납 · 처분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출항일, 입항일, 폐어구 처분일을 기록합니다.
2. ②란에는 조업시 사용한 어구를 기록합니다.
3. ③ · ④란에는 출항시 · 입항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량을 기록합니다.
4. ⑤란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기 위해 어구를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량을 기록합니다..(입항시 최종적으로 어장에 설치된 모든 어구의 양을 의미합니다)
5. ⑥란에는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중 유실된 어구량(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을 기록합니다.
6. ⑦란에는 보유한 어구중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폐기한 어구량을 기록합니다.
5. ⑧란에는 폐기한 어구를 반납 또는 처리한 장소를 기록합니다.(보증금 회수관리장소, 해양쓰레기 집하장, 폐기물 처분업체, 재활용업체 등을 의미합니다)
6. ⑨란에는 어구관리를 책임지는 선장 또는 선주가 서명합니다.

## 유실어구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신고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어선의 명칭      | 총톤수   | 어선번호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신고<br>내용 | 유실일시        |       |      |    |
|          | 유실장소(위도/경도) |       |      |    |
|          | 유실수량(m/통/개) |       |      |    |
|          | 유실사유        |       |      |    |

「수산업법」 제7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귀하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u>&lt;신 설&gt;</u> | <p><u>제74조의2(어구·시설물의 관리 등) ① 행정관청은 영 제41조의 2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어구·시설물의 정보(품명, 규격, 수량, 사진 등)</u></li> <li><u>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u></li> <li><u>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u></li> </ol> <p><u>② 영 제41의2제1항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다.</u></p> <p><u>③ 행정관청이 영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어구·시설물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69호의3서식에 따른다.</u></p> |
| <u>&lt;신 설&gt;</u> | <p><u>제74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어획물을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어구부설 해역에 배출하거나 위판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p>                                                                                                                                                                                                                                                                                                              |

제76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에 전액 귀속할 수 있다.

제76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71조제1항-----  
 -----  
 --- 접수한 -----  
 -----  
 -----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

제83조의2(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 법 제7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
2. 영 제2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근해안강망어업
3. 영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4. 영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

제83조의3(어구관리기록 및 유실 어구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어업인이 작성해

야 하는 어구관리기록부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실된 어구의 신고는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 입항지 관할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별지 제72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방문, 유·무선통신, 전자적 방법 등)해야 한다.

1. 자망 1천 미터 이상

2. 통발(장어통발 포함) 100개 이상

3. 안강망 1통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실어구 수거 또는 선박 항행 안전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관련 시스템 입력 등 포함)해야 한다.